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- 3호

「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13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시공성, 경제성이 우수한 건설신기 술의 적극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비 및 건설 후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신기술에 대한 용어정의, 조례의 적용범위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).
- 나. 건설신기술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 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심의·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와 건설공 사에서의 심의·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

및 제8조).

- 라. 시공성, 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설계반영의무를 규정함(안 제9조).
- 마.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위치에 표지 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, 번호, 건설신기술개발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건설신기술 실명제를 실시함(안 제10조).
- 바.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료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우수한 건설신기 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・주소・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ykh507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건설신기술"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건설기술로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"발주청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 - 1. 대전광역시
 - 2. 자치구. 다만,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건설공사에 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 - 1.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
 - 2.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발주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에 따라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③ 제1항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- 제7조(심의·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)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심의·자문 사항의 사후관리)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설계반영의무) ① 발주청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제3 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그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건설신기술 실명제)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 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, 건설신기술개발자, 시공자, 시공일 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자료축적 및 활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.
 - 1.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
 - 2. 제6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
 - 3.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

- 제12조(포상) ①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【 건설기술 진흥법 】

- 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건설기술의 진흥·개발·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·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특별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,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며,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- 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.
- 제14조(신기술의 지정·활용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(이하 "신기술"이라 한다)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기술개발자"라 한다)를

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.

-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,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·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, 기술사용료,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】

- 제34조(신기술의 활용 등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기술개발자"라 한다)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

- 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- 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 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
- 3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
- 4.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
-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5조(설계의 경제성등 검토)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(이하 "설계의 경제성등"이라 한다)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 - 1.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
 - 2.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(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 경은 제외한다)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
 - 3.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

-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·횟수·대가기준,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